

법정책이슈브리핑

Law & Policy Issue Briefing

제2025-3호

발행일 : 2025. 10. 14. (화)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이준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I. 들어가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글로벌 수준에서도 손꼽히는 거래 규모와 높은 유동성을 자랑한다. 특히 원화 마켓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활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참여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5-3호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 등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례를 확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히 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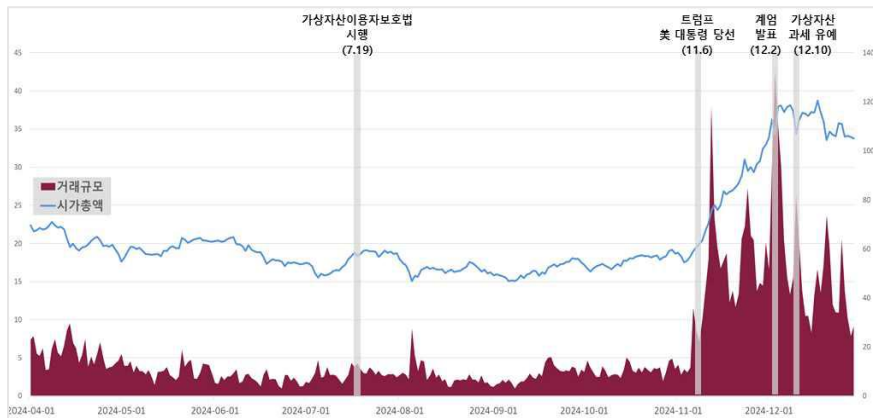
II.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현황 및 투자 환경

1. 가상자산 거래 규모 및 현황

가. 가상자산 거래 규모

'24년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 원(코인게코 기준)으로 '24.6월 말(3,125조 원) 대비 60%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은 107.7조 원('24년 말)으로 '24.6월 말(56.5조 원) 대비 91%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345조 원('24년 하반기)으로 '24년 상반기(1,087조 원) 대비 24% 증가하였다. 미국에서 복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24.1월)됨에 따른 기관자금 유입 본격화 및 친(親)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며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한 것으로 파악된다.¹

[그림 1]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4.4월 - '24.12월)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 5.)

Chainalysis의 최신 Geography/Adoption 리포트(2025)에 따르면 법정화폐로 코인을 매수한 총량을 기준(fiat on-ramps)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2조 달러의 거래 규모를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시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같은 기간 약 1.0조 달러의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단일국가 단위에서는 최상위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²

나. 국내외 동향 및 논의

¹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 5.)

² <https://www.chainalysis.com/blog/2025-global-crypto-adoption-index/>

블랙록, JP모건과 같은 대규모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블랙록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에 참여하고,³ 최근 한국 정부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아시아 AI 허브 관련 투자 협의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⁴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용이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와 논의와 산업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⁵ 일각에서는 차명거래나 AML 방지를 위한 능력이 구비되지 못하고, 국내 VC들이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국내 시장이 외국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⁶ 금융위 관계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AML 능력이 갖춰지면 외국인의 가상자산 국내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⁷

2. 해외 가상자산 제도 및 투자 환경

가. 미국

2024년 1월 10일, SEC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P(listing & trading)를 승인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⁸ 이 발표는 “보다 지속 가능한 경로”로서 제도권 내 디지털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년 4분기 기준, 1억 달러 이상 규모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보유한 금액은 274억 달러로, 전분기(124억 달러) 대비 114% 증가했다.⁹ 즉, 제도화된 금융상품 도입이 기관투자자 등 참여를 촉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Grayscale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은 SEC가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이후 SEC가 그 결정에 따라 ETP 승인을 재고하게 된 경로가 보고된 바 있다.¹⁰ 이 사례는 “제도화 + 금융상품 다양화 → 제도권 유동성 유입”이라는 전략이 미국 시장에서는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나. EU

³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56423g>.

⁴ <https://fintechnews.hk/35657/fintechkorea/south-korea-blackrock-ai-capital/>.

⁵ 2025년 2월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여 단계적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국경간 가상자산,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가상자산 2차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등 다수 입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⁶ ‘상장법’으로 차익 챙긴 뒤 “I♥Korean”...실명거래 비웃은 외국인 돈 벌었다, 한국경제 2024. 8. 11. 자 기사; “한국가상자산시장, 외국인놀이터 될수도”, Decenter 2023. 9. 12. 자 기사 등.

⁷ 금융위 “외국인국내가상자산투자, 자금세탁 방지능력구비되면허용될것”, BLOTER 2025. 4. 2. 자 기사.

⁸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gensler-statement-spot-bitcoin-011023>.

⁹ <https://coinshares.com/us/insights/research-data/us-bitcoin-etfs-institutional-adoption-continues-in-q4-2024/>.

¹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https://www.winston.com/en/blogs-and-podcasts/non-fungible-insights-blockchain-decrypted/road-to-bitcoin-investment-for-sec-registered-investment-advisors-cleared-with-secs-approval-of-11-spot-bitcoin-etfs>.

2023년 6월 EU는 암호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MiCA 규정을 채택했다. MiCA는 발행자·거래소·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 투명성, 허가(authorisation), 감독 등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통일된 규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MiCA 체계 하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역내 어느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도 전체 유럽 연합 시장에서 영업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가 도입되어, 외국 사업자나 투자자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데 드는 법적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¹¹ MiCA는 이머니 토큰과 자산준거 토큰에 대해 엄격한 지급준비금 유지, 유동성 요건, 공시 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다. EU는 “규제 예측 가능성 + 단일 시장 틀”을 주요 외국인 유치 매력 요소로 삼고 있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블록체인 허브로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MAS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사업이 일정 조건 하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¹² 예컨대, 거래량 제한, 고객 수 제한 등의 조건 아래에서 규제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19년 제정된 Payment Services Act 하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DPT service providers)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을 마련해 두었다.¹³ 또한 이 사례는 “규제 유연성 + 실험기반 허용 +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이 핀테크·암호자산 분야에서 외국 사업자를 유치하는 주요 수단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III.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1.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외국인 투자 여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되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아직 용이하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법령에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는 없으나,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개설 및 거래 제한이 여전히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¹⁴ 2025년

¹¹ Issam Hallak, Rasmus Salén, Non-EU countries' regulations on crypto-assets and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EU, EP Briefing,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3. 9.

¹² <https://www.mas.gov.sg/development/fintech/regulatory-sandbox>.

¹³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blockchain-cryptocurrency-laws-and-regulations/singapore/>.

¹⁴ “자연인(사람)인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이는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구두의) 행정지도로 외국인 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자연인, 법인 모두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음; 천창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 블록체인법학회 등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발표자료, 2025.7.18.

2월 13일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외국법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외국의 투자 환경을 참고하여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외국인 참여를 촉진 혹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해외의 주요국은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와 금융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자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나 규제 명확성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체계 등을 개선하여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신고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유출 등 위험에 대비하고, 가상자산 과세 방안,¹⁵ 가상자산 커스터디 생태계 구축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명확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가상자산의 국내 ICO 허용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현물 ETF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여 투자 매력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의 규제샌드 박스를 활용, 규제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외국인의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이미 글로벌 최상위권의 규모와 활발한 거래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본격적인 참여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국은 제도화와 규제 명확성, 금융상품 다양화, 그리고 규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법적 안전망을 정비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규제·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 다양화, 커스터디 생태계 확립,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 ICO 허용 여부나 현물 ETF 도입과 같은 금융상품 혁신도 검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규제 목적과 글로벌 자본 유치라는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법 제도적 설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¹⁵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현행 세법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현행법상 과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분쟁 중 상당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해당 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과세시점은 2027년 1월로 연기). 개정 법인세법은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이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히 했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 ○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법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법정책이슈브리핑을
수시 발간합니다. 법정책이슈브리핑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www.jipyong.com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